

제299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24. 1. 12.[서면심의]

□ 안 건 명 : 상수도 기반시설(배수지, 가압장, 상수관로) 실태조사 용역(용역발주심의)

위 안전에 대한 제299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붙임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채택」을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행하는 “상수도기반시설(배수지, 가압장, 상수관로) 실태조사 용역”으로 수립하는 관리계획 등이 “서울시 상수도정비기본계획”과 다른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와 협의 필요
- 7. 과업의 내용(p6)을 조례상의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작성 세부항목에 부합되도록 작성
- 11. 성과품 / 2) 용역성과품 작성 지침 [내용추가]
 -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 현황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서명 날인

붙임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299차 상수도 기반시설(배수지, 가압장, 상수관로) 실태조사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상하수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어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주기관 -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인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행하는 “상수도기반시설(배수지, 가압장, 상수관로) 실태조사 용역”으로 수립하는 관리계획 등이 “서울시 상수도정비기본계획”과 다른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 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와 협의 필요 3. 내실있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본 용역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에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참여 검토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검토<p14, 12. 특기사항 3) 관련> 5. 계약상대자의 책임 추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법률준수의 의무 6.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추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등 7.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목록 추가 검토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4년 1월 2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제299차 상수도 기반시설(배수지, 가압장, 상수관로) 실태조사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상하수도	1. 7.과업의 내용(p6)을 조례상의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작성 세부항목에 부합되도록 작성 2. 8.과업수행단계(P9)→ 8. 과업의 수행 방법으로 수정하고 1) 착수신고서 제출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3) 과업수행 단계별 보고 4)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 3.. 설계변경에 관한사항 추가 작성 4. 3.계약방법(p2)은 과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	
종합의견	(원안채택, <u>조건부채택</u> ,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2024년 1월 2 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299차 상수도 기반시설(배수지, 가압장, 상수관로) 실태조사 용역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성과품	1. 제출 서류에서 성과품(최종)은 종이문서외“용역 산출물이 수록된 USB”추가 검토	
기 타	1.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대하여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용역자문회의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조직개편에 따라 발주기관이 변경되었으므로, 명칭변경이 필요합니다.(상수도사업본부→서울아리수본부)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4년 1월 2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299차 상수도 기반시설(배수지, 가압장, 상수관로) 실태조사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1. 7.과업내용 중 문구 추가 - 당 초 : 유지관리 - 변 경 : 안전 및 유지관리</p> <p>2. 7.과업내용/ 1)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정보수집[내용추가] ○ 민원 및 사고 이력정보 수집 - 수질오염 등에 의한 발생한 민원, 조치사항 등 - 건설중 또는 운용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 각 중 사고 관련 사항</p> <p>3. 7.과업내용 1)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 . . 정보수집/ ○ 수집된 유지관리정보 . . . DB시스템 정보입력 [내용추가] - 조사 기간내 상수도 시설물에서 발생 된 민원 및 사고 이력 정보 입력</p> <p>4. 11. 성과과품/1)제출내용/성과품 및 제출자료 [목록추가] - USB 등 저장파일 1식</p> <p>5. 11.성과품/2) 용역성과품 작성 지침 [내용추가] -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 현황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서명 날인</p> <p>6. 12. 특기사항 [내용 추가] 5)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 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4년 1월 2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299차 상수도 기반시설(배수지, 가압장, 상수관로) 실태조사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종합	<p>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장·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p>2. 과업수행 일반지침의 10)의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보완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p>3.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다음 명칭은 법령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수정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4년 1월 일

심의위원 :